2024 -2호(2. 29.)

입법정책담당관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ONBUK STATE COUNCIL

차 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1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6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1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5

□ 환경복지위원회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17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2

□ 농산업경제위원회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4
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7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0

□ 교육위원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3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5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 38

Ⅳ.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1항 등 관련) ····· 53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의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58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6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67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 72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0.] [경기도조례 제7871호, 2024. 1. 10., 제정]

1. 제정이유

경기도 소방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 및 발굴**을 통해 경기소방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범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역사사료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사항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역사사료관의 기능】

1. 소방유물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조사
2.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 등
3.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다. 자료수집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소방유물을 기증하거나 발굴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수집할 수 없는 유물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사. 소방유물의 수집·발굴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경기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굴·수집, 보존·관리**함으로써 **경기도 소방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유물” 이란**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영상 및 음향자료, 물품, 복식, 장비** 등을 말한다.
2. “수집” 이란 수증, 수탁, 구입, 대여, 복제 및 소방 혹은 관계기관 간의 물품 관리전환·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방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의 권한 일체를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수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방유물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 란 전시회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일정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 란 소방유물을 탁본·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촬영 및 녹음을 하여 영상·사진·음향자료를 만드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편성) 도지사는 소방유물의 발굴·수집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기 소방 역사 사료관(이하 “사료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료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료관의 기능)**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유물의 수집 · 관리 · 보존 · 전시 · 연구 · 조사
2.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 등
3. 국 · 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 협력

제7조(수집대상) 사료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 역사와 관련되는 도내 · 외 자료
2. 그밖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8조(기증 및 발굴 등에 대한 예우) 사료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소방 역사 자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소장품을 기증한 사람에 대한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우
2. 소장품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실비 보상 등

제9조**(수집 금지 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
4.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문화재 등록)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4조에 따라 국가 문화재 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 소방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방 역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유물의 문화재 등록 및 지정 등의 신청을 위한 사항
3. 소방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소방유물 수집 및 발굴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임명위원 2명은 관련 학위 보유 또는 식견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 5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소방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소방 역사와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공립 박물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전시회 등)** 소방유물과 자료를 활용한 문화진흥 및 도민의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전시회, 학술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소방유물의 수집, 발굴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 법인 ·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087호, 2024. 1. 11., 제정]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나. 정책 유효성 검증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폐지 대상 정책 등의 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폐지여부 심의 기준】**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관련】**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시의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3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6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 항공기 · 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별표에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71의3. 「재난안전통신망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4. 2. 6.>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6.>

제26조(보상금) ①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4. 2. 6.>]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30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2. 6.>

1. ~2. (생 략)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1-29~2024-02-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 개정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1.>

1. ~ 5. (생 략)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환경복지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 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 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 · 평가 · 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미확인물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4.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4. 2. 6.>

1.~5. (생 략)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⑤ (생 략)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생 략)

1. ~ 2. (생 략)
3. 유해성미확인물질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2.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2-13~2024-02-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 및 교육적 차원의 갈등 중재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수업 공백과 교사 교체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학습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이의제기·삭제요구 등 관련 절차가 전무**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등록된 자는 추후 **수사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아도 **해당 정보가 시스템상 영구보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 없이 광범위한 관계 기관이 조회·열람할 수 있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대단히 높음.

이에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 개정문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본문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시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2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를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 · 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 ·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 · 도지사와 시 ·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2-14~2024-02-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 · 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 · 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개정문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 [고용노동부령 제3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의 대변기 최소 설치 · 이용 의무 대수**로 하려는 것임.

◇ 개정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 3. (현 행)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현 행)
탈의실	(현 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1-22~2024-01-31)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한편,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협회의 업무에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 개정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본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2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8. 14.>

1. ~ 10. (생 략)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 략)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 9. (생 략)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생 략)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1. ~ 5. (생 략)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 ② (생 략)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6의2.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 8. (생략)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한다.

□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2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추가함**.

◇ 개정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에“를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29. (생 략)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시행일: 2024. 5. 7.] 제9조제3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외 18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2-5~2024-2-14)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해당 개정안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통과됨.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이 아닌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임. 이러한 예산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오랜 문제제기 끝에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됨**. 그런데 5년 만에 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에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 몫으로 떼어갔고, 올해 59조에 달하는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6조 9천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미 대대적인 교육활동 사업 축소에 나섰음.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만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면 될 것임.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삭제)

◇ 주요내용

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 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나.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함.**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47호, 김경민)

□ 서론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13일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안)」(이하 '차량순환성규정(ELVR)' 이라 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침(Directive)으로** 관리되던 기존의 「폐차지침(ELV)」)과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 승인 지침(RRR)」을 폐지하고 이를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시켜 일원화한 것으로 추후 자동차 산업에서의 차량순환성 방안의 초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조선, 철강, 석유와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산업의 특성상 철강 및 구리 등과 같이 무거운 소재의 부품을 많이 필요로 한다. 특히 EU의 자동차산업은 철강 약 700만 톤, 구리 약 200만 톤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철강의 17%, 구리의 6%를 소비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량 소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루미늄(약 200만 톤)과 플라스틱(600만 톤)의 구성비도 10%와 42%를 차지하는 등 **급격히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U는 2021년 7월 **'Fit for 55'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2030년까지** 새로 발매하는 승용차·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각각 55%, 50%씩 줄여야 하며, 2035년부터 EU 내에는 탄소 배출량이 없는 **신차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안과는 별도로 자동차 대부분의 소재는 천연자원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천연자원 대신 **순환자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자동차업계에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EU는 ELV가 제정된 후 20여 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ELVR 입법화를 통해 EU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생산 시 최대한 순환자원이 이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명을 다한 차량의 지속가능한 순환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ELV Directive: 폐차지침(End-of-life Vehicle Directive)

이하에서는 자동차산업에서의 물질 재활용률, 자동차 해체의 용이성을 포함한 디자인요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U의 ELVR을 소개하고 향후 규정 논의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EU가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EU 차량순환 현황 및 입법 배경

1. EU 폐차 발생 및 재활용 현황

ELVR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EU의 자동차 재활용 현황과 자동차업계 자원순환성 관련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2년 기준 약 16억 3천대로 2010년(약 10억 대)과 비교하여 약 63% 증가**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추후 **폐차발생도 증가**하는데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동차 수는 2016년 약 497만 대에서 2019년 약 623만대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기준 약 567만 대로 감소하였다([표 1] 참고)). 회원국별로는 자동차 생산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1】 (단위: 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U total	4,972,489	5,435,483	6,259,891	6,230,503	5,519,733	5,669,685
Belgium	106,458	120,896	142,852	134,629	110,161	103,659
Bulgaria	92,706	102,442	99,835	85,670	68,635	87,362
Czechia	145,928	154,306	169,715	178,683	167,814	174,638
Denmark	89,039	117,124	117,519	119,551	95,084	104,515
Germany	412,801	506,531	560,455	461,266	406,044	396,773
Estonia	11,184	16,236	18,147	15,293	15,501	20,403
Ireland	98,213	140,788	162,521	149,445	118,867	145,628
Greece	46,573	39,761	47,141	49,533	44,7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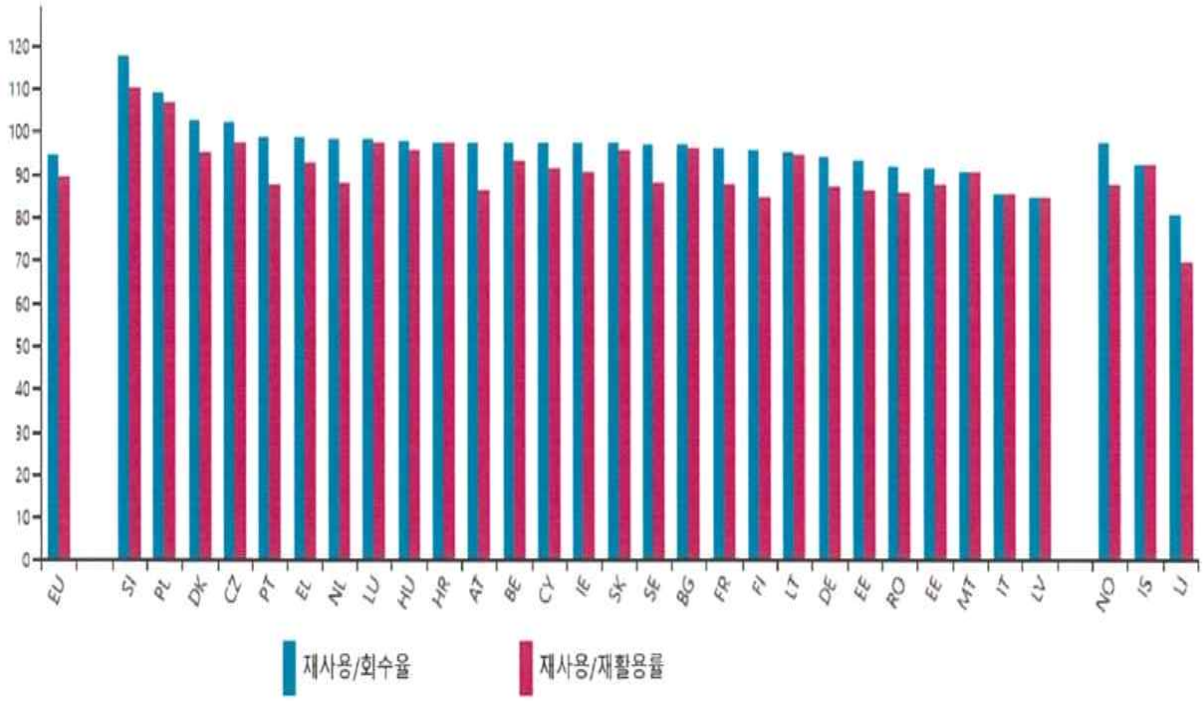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rance	1,046,083	1,138,742	1,571,776	1,623,522	1,331,185	1,345,831
Croatia	20,386	21,074	27,404	40,892	46,919	32,929
Italy	978,960	990,876	1,030,318	1,094,731	1,002,401	1,172,305
Cyprus	5,151	5,453	7,523	10,170	9,367	-
Latvia	8,049	11,439	11,435	11,592	11,885	10,247
Lithuania	21,306	21,066	20,629	22,001	31,147	32,778
Luxembourg	1,854	1,972	3,103	2,827	2,416	2,497
Hungry	15,141	15,573	19,280	20,743	19,526	17,614
Malta	5,632	7,570	7,599	6,616	8,108	9,131
Netherlands	197,488	199,506	214,013	177,404	194,982	197,046
Austria	48,077	58,462	60,272	54,424	50,944	57,722
Poland	380,529	495,805	514,210	450,066	386,826	445,671
Portugal	88,559	99,910	107,140	111,112	101,378	117,997
Romania	46,572	49,830	67,344	84,621	79,360	-
Slovenia	7,093	8,590	12,141	15,182	15,493	11,574
Slovakia	36,931	35,328	39,343	52,722	53,355	40,762
Finland	114,460	128,280	120,040	100,922	109,099	114,404
Sweden	186,875	192,395	204,458	186,370	175,748	171,576
Iceland	6,527	9,483	11,392	11,635	10,927	-
Liechtenstein	260	326	213	180	195	131
Norway	142,208	143,664	143,767	144,933	138,203	129,222

자료: Eurostat, 「evnwaselvt」, 〈https://ec.european.eu/eurostat/databrowser/view/evnwaselvt/default/table?lang=en〉 재가공

EU 회원국별 폐차 재활용 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기준** 재사용/회수율 및 재사용/재활용률은 [그림 1]과 같다. **몰타와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95.0% 이상의 재사용/회수율 및 재사용/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EU 폐차의 재사용/회수율 및 재사용/재활용률(2020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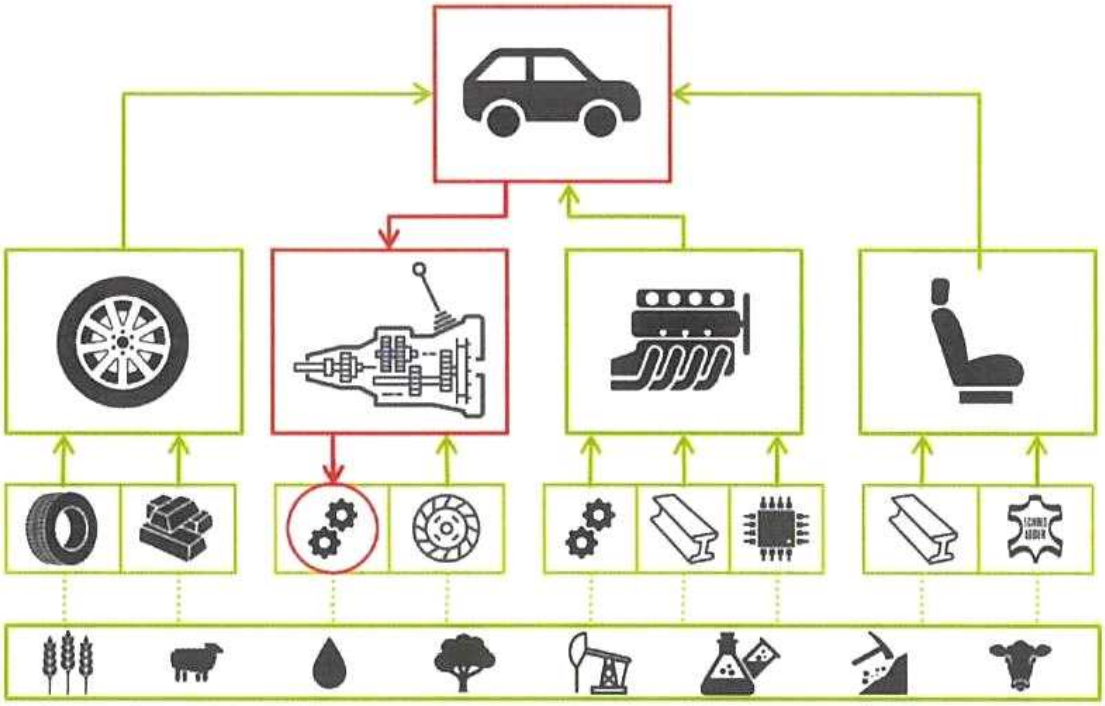


주: 재사용/회수율은 재사용되거나 회수된 비율이고 재사용/재활용률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비율을 의미함

2. EU 차량순환성 데이터 플랫폼(CATENA-X) 구축 현황

EU 자동차업계는 ELVR이 제안되기 전부터 이미 차량순환성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기반(CATENA-X)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TENA-X는 각 산업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인 Gaia-X 중 하나이다. 자동차 업계가 구축한 **CATENA-X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관련 이해관계자 컨소시엄이 구축한 것으로, 자동차제작사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권한 보호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플랫폼 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2】 EU 자동차 이해관계자 컨소시엄이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 추적 현황



CATENA-X는, ①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주권 확보, ②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저감·순환경제 등 규제대응, ③자동차 산업공급망 및 경쟁력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10개의 협업표준 선정, ④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변화되는 규제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EU 차량순환성규정 도입 배경

EU는 2000년 10월 21일 회원국별로 상이한 자동차 재활용 관련 법령과 제도로 인해 EU 단일 시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차지침(ELV)」을 발효**하였다. 또한 실제 **재활용률**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 승인 지침(RRR)」을 마련**하였다.

이 두 지침([표 2] 참고)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한 후 폐차와 자동차 폐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EU 유치산업과 경제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차량 전(全)주기 관리를 통해 폐차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처리업자가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지침은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최소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부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EU 자동차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 및 **차량순환성 구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표2】ELV와 RRR 지침의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ELV	- 자동차 폐차 이후 폐기물 감소를 위해 관련 부품 재사용, 재활용, 재생의무 비율 부여(재활용성 형식승인 지침과 의무 비율 동일) - 2003. 7. 1.일 이후 역내 출시된 신규 차량에 4대 유해 중금속(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사용 금지
RRR	- 수명 다한 차량의 재사용, 재활용, 재생 기능률 의무 부여 - 모든 종류의 에어백, 안전벨트, 차량좌석, 핸들,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후처리 장치 등 재사용 금지 부품 지정

주: 재사용(reuse): 폐차의 부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재활용(recycle): 폐차의 부품 및 원자재를 타목적으로 재가공하는 것, 재생(recover): 폐차의 부품 및 원료물질의 회수 및 열회수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EU 재활용정책 변화의 특징**은 제품의 유해성과 재활용성을 관리하던 정책을 넘어서 개별 물질별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목표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별로, 즉 물질단위별로 재활용 목표치를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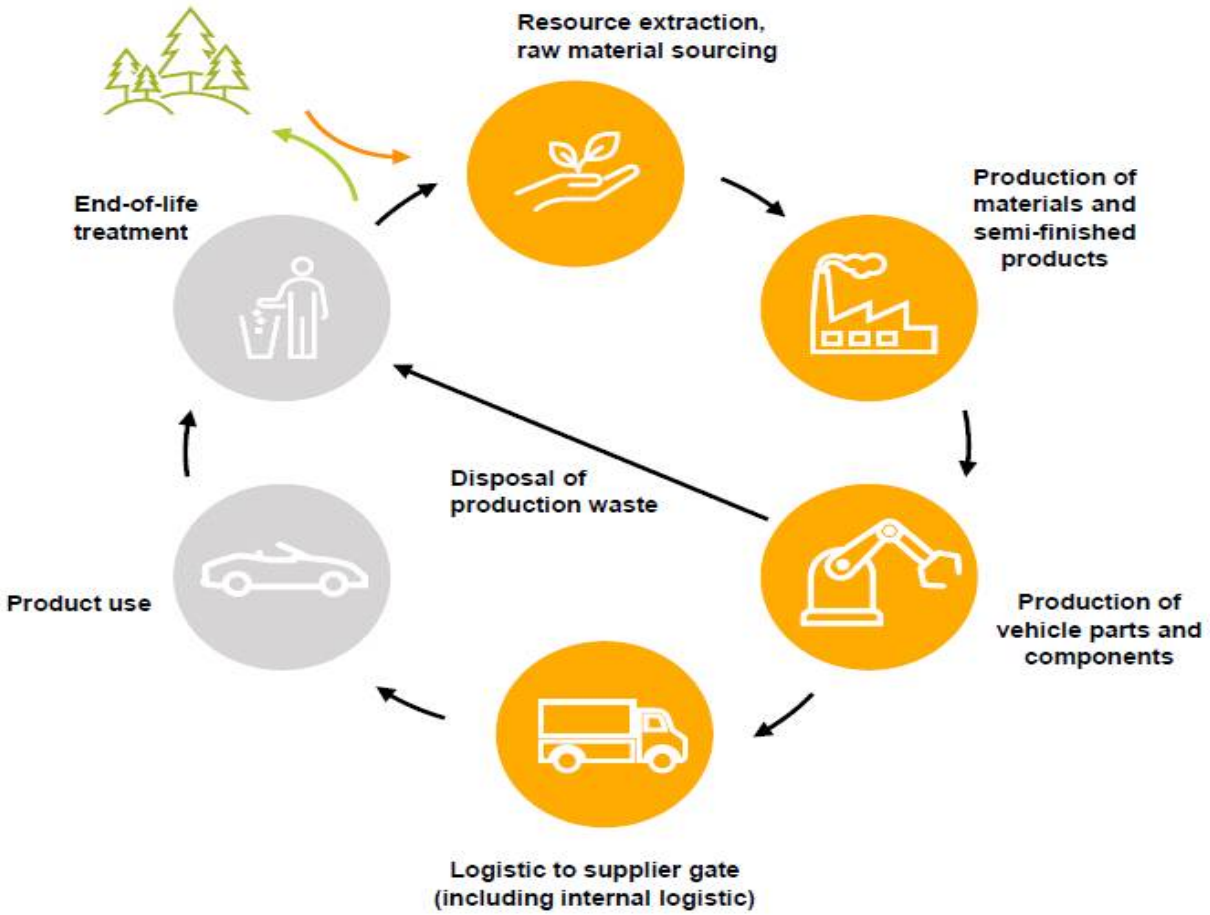
자동차산업에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Fit for 55'와 'EU Green Deal'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인 신순환경제액션플랜(이하 'CEAP2'라함)을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폐기물의 관리와 순환성 강화방안은 ELVR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순환자동차(Circular Car)를 생산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EU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ELVR이다.**

□ EU 차량순환성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1. 주요 내용

EU는 ELVR을 통해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CEAP2 이행 방안을 채택하여 차량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차량용 플라스틱소재 부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뿐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순환성을 높이는 설계를 의무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ELVR에서는 수명을 다한 차량 및 중고차가 단순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폐기되지 않은 부품 소재가 순환자원으로 관리될수 있도록하여 이 순환자원이 **신차 제조시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설계 단계: 순환설계(Design Circular)

EU는 ELVR 발효 72개월 후부터 신차 설계 시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최소**

85%로, 재사용 및 재생가능률을 95%로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ELVR 제4조). 또한 제7조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폐차단계에서 배터리, 모터,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부품을 분리할 때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찍부터 EU는 2019년 그린 딜(Green Deal)17)의 후속조치로 2020년 CEAP2를 발표하면서 순환경제를 탄소감축에 기여할 핵심 도구로 제시하고 있고, CEAP2 이행방안)으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및 수리가능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재활용 가능성, 자재 회수 가능성, 재생원료 함유, 유해화학물질의 존재, 탄소 및 환경발자국, 환경영향 등을 포괄하는 「에코디자인규정(ESPR)」19)을 전분야에걸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ELVR은 자동차산업에도 ESPR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U의 의지)

나. 생산 단계: 재활용 소재 사용(Use recycled content)

EU 회원국은 기존 ELV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와 더불어 물질별 재생원료 이용률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에 필요한 원료를 천연자원뿐 아니라 순환자원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후 ELVR이 발효되고 72개월 후부터는 재활용 원자재 사용 의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신차 생산 시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려진' 후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최소한 25%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차 생산 시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플라스틱(r-plastic)의 25%는 반드시 폐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통해 구축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25:25 규정)(ELVR 제6조 및 제10조).

만약 자동차 한 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무게를 약 200kg으로 보고 이를 25:25 규정을 적용한다면 신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r-plastice 필요량은 37.5～50kg이고, 이 중 폐차 유래 r-plastic의 필요량은 약 9.4～12.5kg이다.

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은 ELVR이 통과될 경우 규정이 발효되고 23개월

이내에 EU 집행위원회의 위임입법을 통해 재활용 목표 설정계획과 그 외 핵심 원자재에 대한 추후 평가가 예정 되어있다(ELVR 제6조. 또한 제조업체는 추후 ELVR이 통과 된다면 규정이 발효되고 36개월후부터 철강, 마그네슘, 알루미늄, 희토류의 재활용 비율에 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폐차 단계: 더 많이, 더 똑똑하게 수집(Collect more and smarter)

ERVR이 발효되고 60개월 후부터 회원국의 **폐차 재활용업자는 폐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중량을 25%에서 30%로 늘려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폐차 처리를 위한 공인처리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은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 폐차가 파기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ELVR 제28조).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폐차 해체업체가 폐차시키기 전에 주요부품을 제거하고, 해체업체가 폐기물 처리 시 환경 준수 여부를 파악하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35조에서는 파쇄(shredder)되지 않은 비활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라. 중고차 수출 규제 단계: 폐차, 중고차에 대한 더 나은 대우(Treat Better)

EU는 중고차와 폐차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여 차량이 되도록 폐차되지 않도록 추적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중고차 수출로 인해 제3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된 중고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국의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는것이다. EU는추후 역내 사용기준에 미달되는 중고차는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ELVR은 수출을 요하는 폐차의 경우에는「폐기물 선적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C/1013/2006)」에 의거하여 EU와 관련 요건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OECD 회원국 중 목적지 당국의 승인하에 역외국으로 운송되거나 폐차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고차 수출 요건을 정하고 있다(ELVR 38조 및 Annex I).

【표3】EU 중고차 수출 요건

- 중고차량은 중고차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회원국에서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될 경우에만 중고 차량으로 역외국 수출 가능. 또한 관할 당국은 수출 차량의 차량 등록 번호(VIN)와 해당 중고 차량이 수출 가능 요건을 충족 여부 확인 후 수출 허용

- 중고차 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폐차로 간주)

a. 자동차 차체의 절단

b. 단열폼(insulating foam)으로 밀폐, 용접 시

c. 엔진룸 또는 운전석과 객석이 파괴될 정도로 불에 탔을 경우

d. 대시보드 위 까지 침수된 경우

e. 아래 구성품 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경우

- 타이어 및 휠 등의 지상 결합부품, 서스펜션, 스티어링, 제동 및 제어 부품
- 좌석 고정 및 조인트
- 에어백, 프리텐셔너, 안전벨트 및 그 주변 작동 부품
- 차량 차세(hull) 및 섀시(Chassis)

f. 차량 구조 및 안전 요소에 금속 노화, 프라이머의 파손, 과도한 부식 등 돌이킬 수 없는 기술적 결함으로 교체 불가 상태

e. 수리를 위해 엔진, 기억박스, 쉘, 차애 어셈블리 교체로 원래 차량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

또한 회원국의 세관은 수출 중고차의 수출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거버넌스 개선(Improve governance)

EU는 차량을 제조하는 생산자에게 폐차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EPR)하도록 하고, EU 역내 폐차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때 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거나 승인된 책임기관(PRO)에 재정적 기여금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제조기업의 재정적 책임은, ①폐차 처리 비용이 중고 부품 및 재활용된 2차 원자재 비용 등 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거 비용, ②폐차 수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비용, ③통지시스템 구축 비용, ④데이터 수집 및 관할 당국 보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ELVR 제20조).

ELVR은 EPR 분담금이 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한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재활용업자가 신차 제작 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폐차 유래 r-plastic의 품질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재활용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 차량순환성여권 및 차량 범위 확대: Circularity passport & Cover more vehicles)

EU는 ELVR이 통과되어 법안이 발효된 84개월 후부터 EU 역내에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순환성여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해당 여권 관련 사항은 향후 EU 집행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입법화될 예정이다(ELVR 제13조).

또한 승용차 및 승합차에만 적용되던 ELV는 동 규정을 통해 **법안 발효후 96개월 이내**에 수명을 다한 **오토바이, 대형 트럭(화물차), 버스, 트레일러 등까지** 처리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량들의 생산 및 단종 요건과 관련하여 환경발자국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대상 차종 확대에 앞서 해당 차량의 부품, 원자재에 관한 정보와 교체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폐차가 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및 전망

1. ELVR 검토 시 고려사항

EU의 ELVR은 초안만 발표된 단계로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ELVR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LVR이 기존 폐기물 관련 법률안들과 상충 우려가 있어 기존 폐차 유해성 관리와 EVLR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다면 ELVR 제5조에서 “자동차에 있는 위험 우려물질과 그러한 부품을 최대한 노력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oC에 대해서는 ESPR 제2조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독성 등에 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ELVR과 ESPR의 연계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최대한 노력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문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차량순환성을 담보하기 위한 순환자원의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순환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고성능 폴리머 플라스틱이 사용되는데 ELVR이 요구하는 차량용 r-plastic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r-plastic의 안정적인 수급체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평균 10년 이상 운영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로 인해 플라스틱의 원래 기능과 재질이 훼손될 수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신차의 플라스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신차용 r-plastic으로 사용할 때 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 한 대를 생산할 때 필요한 폐차 유래 r-plastic을 평균 약 10kg로 감안하고 2022년 등록차량의 10% 정도만 순환자동차로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약 2천만 톤의 폐차 유래 r-plastic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CEAP2로 인해 r-plastic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제조업체가 순환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r-plastic 수급체계가 우선 갖춰질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업계는 향후 플라스틱의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을 포함한 재활용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재사용, 재활용을 넘어 다양한 물질이 재생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ELVR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재생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순환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본 규정에 자동차 주 소재인 강철이나 알루미늄도 폐차 유래강철과 알루미늄도 추가되어야 하며, 중고차 수출 규제 요건의 경우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 배기가스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최소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순환자동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24년부터 발효되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규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2031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재활용 원자재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양한 물질에 대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EU의 입법화는 가속화될 전망이고 이는 차량순환성규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탄소배출 저감'이 순환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평가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해체 용이성이 ESPR과 연동될 수 있어야한다. 플라스틱 공급망 내에 있는 자동차해체업체들이 해체한 부품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이동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ELVR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드는 부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파쇄이후 플라스틱(post-shredder)'에서 고품질의 r-plastic 소재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의 특징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ESPR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이에 향후 ELVR 심사과정에서 ESPR과의 연계방안, 안전성을 담보한 플라스틱 생산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탄소배출 저감 평가 등이 포함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량순환성 측면에서 CATENA-X에 예상되는 변화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저감·순환 경제 규제대응으로, 이후 EU는 CATENA-X를 통해 EU 자동차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체계, 차량의 전(全)주기 추적 및 관리, 자동차 업체 및 재활용 업체 등 기업간 데이터 연계 방안,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4】CATENA-X 협업 표준이 차량순환에 미치는 변화

협업표준	내 용	변 화
탄소배출 데이터 공유 (CO2/ESG Monitoring)	공급망 내 배출량 데이터 통일・공유	- CO2 배출량 계산체계, 방법론 표준화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부품기업과 협력하여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차까지 CO2 배출량 추적, 저감 기능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관련 데이터 통합, 재이용・재활용 정보 제공	- 자동차・부품・재활용 업체 등 기업 간 데이터 연계 확산, 자원 순환 개선 - 중고차・부품 평가, 소재 회수가 용이 - 자동차 제조사・부품기업이 소재 회수・폐차 단계까지 관여하여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등 준수

2. 자동차업계(CATENA-X)에 미치는 영향

CATENA-X는 신차 제조 시 재생소재 사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는 ELVR 및 2026년부터 도입되는 배터리여권 규제에 대응하는 유력한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어, ELVR과의 연계방안이 추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시사점

EU는 2019년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인 유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회원국들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수단의 하나로 CEAP2를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개별 산업별로 플라스틱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UN 175개국이 2024년까지 ‘플라스틱 사용규제 협약’이라는 구속력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r-plastic의 필요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기존 ELV와 RRR을 통해 관리하던 차량순환성 관리를 ELVR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2031년부터 자동차업계는 순환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함으로 회원국별로 적용되던 차량 재활용 및 순환성 요건을 EU내에서 동일하게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업계의 우려 역시 존재한다. EU 자동차제작업체들은 원활한 r-plastic의 공급망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r-plastic이 순환자동차로 제작될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재생원료의 구속력 있는 방안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ELVR을 통해 역내에서 사라지는(disappearing) 중고차 및 버려지는(abandoned) 자동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탄소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발생억제에 ELVR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LVR 초안을 바탕으로 자동차 소재 핵심 원자재를 순환자원으로 재생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자동차 재사용, 재활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서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EU 자동차업계는 이미 디지털주권 확보, 순환경제 규제대응, 자동차 순환자원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포함한 CATENA-X 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업계가 필요로 하는 순환자원 공급망도, 전과정 탄소배출 저감체계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우선 정책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체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순환자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차량순환성규정이 우리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동차 산업에서의 순환자원 공급망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제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등 관련)

[법제처 23-0389, 2024. 1. 22., 민원인]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관리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하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라 함)(각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공급이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하 “건축사업”이라 함)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 함)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각주: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함(각주: 「환경영향평가법」제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의 일부 구역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건축법」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사업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4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한편(제9조),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준공된 이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가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3항)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의 시행이 허용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는 시장·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10. 8. 회신 13-0319 해석례 참조) 그 **조성된 택지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사업**은 종전의 택지개발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기존 택지개발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의 저감방향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에 그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대상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같은 법 제30조제1항)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용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협의한 내용을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그 실시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도 어디까지나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계획 등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건축사업을 기존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업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건축사업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625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경우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여 그에 따라 택지를 모두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구에서 기존 실시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등이용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의 주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시장·군수등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지구를 원래 계획대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사업의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성격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법제처 24-0008, 2024. 2. 14., 민원인]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를, 같은 목 2)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집합건물로서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행위를 하거나(제1항)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자(제2항)(이하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라 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으로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2호)과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제1호)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아파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아파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각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업무시설(제1호자목)'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제2호가목)'를 각각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의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목 1) 및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도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구분상 아파트와는 구분되는 업무시설에 해당**[같은 표 제14호나목2)]하므로, **“오피스텔”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제1호다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등의 총수보다 많은 경우 입주민 간의 주차분쟁의 우려가 제기되어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보유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그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과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이 아파트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1) 및 2)에서는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일정한 표시를 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등’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그 관리단 및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주체등’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체계상 같은 목 1) 및 2)에 규정된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 같은 목 1)에서 “관리주체 등” 뒤에 괄호를 두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포괄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모두 명시한 것이지, 집합건물법에 따른 **오피스텔 등** 관리단 또는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모든 집합건물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 략)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생 략)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409, 2023. 11. 29., 충청남도 홍성군]

【질의요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홍성군 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홍성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제2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홍성군수가 이와 별도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먼저, 홍성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사무가 홍성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너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홍성군조례안 제3조에서 홍성군수는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홍성군수가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별도로 홍성군수가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홍성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3 참조).

그렇다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홍성군조례안의 내용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거. (생 략)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생 략)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343, 2024. 1. 5., 인천광역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무상교통정책"이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상교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제1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2호), 무상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제3호) 등의 내용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비록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을 **반드시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식, 지급액, 지원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무상교통정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또는 무상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무상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고, **조례로서 무상교통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례안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바. (생 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 더. (생 략)
5. ~ 7.(생략)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 략)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 4. (생 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2024. 1.)-

□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및 산하 공사·공단)는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비해 자본금이 적고 신용도도 낮아서 단독으로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개발사업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하는 공동·공모의 방식이 일반화**되고 활발해져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참여자 간의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도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데다가 막대한 사업자금, 사업 기간 장기화,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으로 사업의 취소나 변경이 어려운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참여자의 부당한 요구나 위법행위 등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민간참여자에 대한 개발이익 유출, 특혜시비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책임성 확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점검함으로써 상식을 벗어나거나 민간참여자에게 위법·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후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대상 및 중점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및 산하 공기업)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 토지수용권이나 조성용지의 단독·저가 매수기회 부여, 국·공유재산 매각 등 각종 유리한 사업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감사원의 개발사업 감사에서 적용한 감사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실시**(2017년 이후 완료되었거나 2022년 4월 기준 추진 중)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하였고, 【표 1】과 같이 지방행정감사1국의 소관 대상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위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은 총 87개였다.

[표 1]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현황(2022년 4월 기준)

(단위: 개)

구분	민·관 공동 사업						민간공모[4]	
	민·관 합동법인[1]		민간특례공원[2]		민간공공주택[3]			
추진단계	종료	진행 중	종료	진행 중	종료	진행 중	종료	진행 중
계 (87)	6	29	2	8	22	11	0	9
	35		10		33		9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주: 1.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참여자가 특수목적법인을 함께 설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참여자가 공동 시행자가 되고 민간참여자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 부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1]
3. 지방자치단체(50% 초과 출자)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4. 국공유지 등을 공모로 선정한 민간참여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총 87개 사업 중 소규모 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공공주택 사업과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업 등 수익성이 낮은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단계(실시계획 인가, PF대출 등)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감사·수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후 자료수집을 통해 중대 비위의 개연성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 감사기간, 난이도, 감사인력(총 40명)등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총 12개 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동두천시)”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이 총 13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

[표 2] 감사대상 선정결과(7개 지방자치단체, 13개 사업)

시·군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	비고
김포시	1. ㉡㉮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50.1%)	
	2. ㉡㉯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50.1%)	
	3. ㉡㉰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50.1%)	
	4. ㉡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20%)	
의왕시	5. ㉢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24%)	
동두천시	6. ㉠㉡지구 택지개발사업	-	추가사업
평택시	7. ㉠㉤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32%)	
	8. ㉡㉠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	민간특례공원	
의정부시	9. ㉡㉡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34%)	
	10.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11. ㉠㉭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구리시	12.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민·관합동(19%)	
광주시	13.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	민간특례공원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통상 개발구역 지정, 사업방식 결정, 사업자 공모·협약 체결, 사업추진과 청산 등의 공통된 단계가 있고, 복잡하면서도 장기간 실시되어 모든 단계를 점검해야 비위를 특정하고 손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① 사업방식 결정, ② 사업자 공모, ③ 사업협약 체결 및 변경, ④ 사업의 실시 및 감독 등 4가지 주요 단계별로 중점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에서는 2022. 4. 11. 감사전략 TF(총 10명)를 구성하여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 보도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처리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숙련된 업무담당자, 업계 관계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1차로 2022. 6. 8.부터 6. 9.까지, 2차로 같은 해 8. 25.부터 8. 26.까지 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상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1차로 2022. 6. 13.부터 7. 1.까지, 2차로 같은해 7. 11.부터 7. 22.까지, 3차로 같은 해 8. 31.부터 9. 23.까지 관계자 면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2022. 10. 4.부터 10. 25.까지 15일간 감사인원 4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방대한 관련자 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1차로 2022. 11. 3.부터 11. 23.까지 15일간 감사인원 23명, 2차로 같은 해 11. 28.부터 12. 9.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연장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공사 사장 등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12. 2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3】과 같이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3】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문책(인원)	주의(인원)	통보	통보(비위)	통보(시정완료)
	건수	인원					
합계	20	15	3(6)	10(9)	4	1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김포시-㉠사업)** 중소기업은행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개가건설, 개나파트너스 등과 IBK/개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제로는 컨소시엄 대표사를 개나파트너스로 하기로 합의하고도 사업계획서는 개가건설을 대표사로 하여 허위 작성·제출함으로써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또한, 중소기업은행 업무담당자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임원은 개나파트너스의 대표이사와 가족동반 해외여행(태국)을 가서 숙박비, 골프비용 등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 김포도시관리공사는 IBK/개가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PFV가 자산관리회사(개나파트너스)와 불필요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나파트너스에 지급의무가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는 데 동의하고,

- PFV가 자산관리회사(개나파트너스)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들과 PFV에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 연구용역 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동의하는 등 PFV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의왕시-㉡사업)** 의왕시는 공모지침서로 요구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 PFV가 대표 출자사와 불필요한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하거나, 자격미달의 출자사(대표 출자사와 운영자 동일)에 물류시설용지를 공급하고,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여 원 과다 산정하였으며, 담당 팀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 **(동두천시-㉢㉣지구)** 동두천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지구 10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였는데도

-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의 전환을 요청하자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가 분양주택건설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 만에 이를 승인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건축위원회)에서 부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적검토" 조건도 미이행

▪ **(평택시-㉤사업)** 평택시는 경기도(산업단지 승인권자)의 보완 명령을 이행하면서 보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보완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였고,

- 평택도시공사는 민·관 합동법인에 출자한 후 민간참여자의 변경 과정에서 기존 민간사업자로부터 기투입비의 정산을 요구받자 「지방공기업법」, 「공사 정관」 등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절차를 누락한 채 63억여 원의 지급을 확약

▪ **(의정부시-㉮사업)**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1만 ㎡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사유로 공모지침서에서 위 의무를 삭제

- 이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 조성을 거부하자, 의정부시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부담은 추후 분양계획승인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한 후,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된 후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원·녹지를 조성

▪ **(구리시-㉯지식산업센터)** 구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총사업비의 3%(112억 원)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받아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감액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액

▪ **(의정부시-유류저장소)**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였던 부지에 미래직업테마파크 건설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받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 분양수익 및 조성용지 매각수익으로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도 정작 목적사업인 미래직업체험관 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동주택 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수익사업 추진의 특혜만 제공할 우려

▪ **(광주시-㉱㉲민간특례공원)**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추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실제 사업협약은 고정 수익률로 잘못 체결하거나, 민간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이에 대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게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여자와 함께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이사들과 자산관리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초래된 손해 **약 259억 여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총 5건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2건은 감사결과를 처리하면서 불문된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2023. 10. 13. 소명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머지 3건에 대해 신청내용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의 면책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감사원권익보호관과 감사부서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건은 면책 일부인정(처분요구 종류 변경), 1건은 면책을 불인정 하였다.
면책신청 및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위원회 자문 결과	처리 결과	면책 인정(불인정) 사유
▪ **제목:**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 협의 ▪ **지적요지:** 동두천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지구 10블록은 LH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데도 –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의 전환을 요청하자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 만에 이를 승인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건축위원회)에서 부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적검토" 조건도 미이행	A B C D E F	면책 인정	면책 일부 인정 [징계요구 및 통보(인사)를 기관주의요구로 변경]	▪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지구 10블록에 분양주택 건설을 추진한 것이어서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등 문제가 없다면 공익에 부합하는 점, –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이견이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제목:** 법령 등의 절차와 다르게 보완명령 이행 및 사업비용 정산 ▪ **지적요지:** 민·관 합동법인에 출자한 후 민간참여자의 변경 과정에서	G H I	면책 불인정	면책 불인정	▪ 이 건 채무부담의 원인인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비용 정산은 정해진 원칙이나 방법이 없어서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결정권자, 검토권자 등에게 정산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한 폭넓은 결정 여지가 있었는데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위원회 자문 결과	처리 결과	면책 인정(불인정) 사유
기존 민간사업자로부터 기투입비 정산을 요구받자 「지방공기업법」, 「정관」 등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절차를 누락한 채 63억여 원의 지급을 부당 확약				- 공사는 결정권자, 검토권자로부터 검토·결정을 받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공사 정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의 기투입비 정산 행위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의 면책 기준 불충족
▪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감액하여 사업협약 체결 ▪ **지적요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총사업비의 3%(112억 원)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받아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감액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액	J	면책 일부 인정	면책 일부 인정 (개인주의요구를 기관주의요구로 변경)	▪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해 공사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이 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 이로 인해 이 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어 공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증금 감액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